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제도

심 용 섭 차장
(농협 도곡동지점)

실명제 시대의 절세 전략

“세금” 하면 우선 머리부터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우선 금융실명제가 실시돼 종전처럼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소득이나 수입을 슬쩍 숨기기 어려워진 ‘세계 앞의 평등’인 세상이 오고 있다.

누구나 세금을 머리 속에 넣고서 세금 전문가와 상의해가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 따라서 초보적이나마 세금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당장 내년부터 거액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 된다. 또한 누구나 한 두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있는 세금우대 저축이 사라진다.

이같은 변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간단히 치부 할 수 있을까? 또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 대상은 점차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종합과세가 얼마 안가

바로 나 자신의 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실명제 시대의 세금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제테크를 위한 기초나 다름없다. 합법적인 절세에 헛되 감하고 부당한 세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경제활동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하나?

이제까지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천징수 세율(20%)로 분리 과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최고 40% 세율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기준 15%로 현행보다 5% 인하 되므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현행보다 오히려

세액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금융소득의 내용

금융소득의 주요 내용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으며 이자소득에는 예금이자, 신탁이익, 5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농·수·축협의 공제포함) 차익, 판매 조건부 채권 매매차익,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공채 및 사채, 증권, 투자 신탁 이익 등이 있으며 배당소득에는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공채 및 사채 투자신탁을 제외한 증권 투자수익의 분배금이 된다. 그렇다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전부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인가? 이제부터 열거하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눈여겨 투자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대의 절세 전략을 찾을 돌파구가 있을 것이다.

첫째, 비과세대상소득으로는

- 1) 94년부터 시행된 은행 및 투자신탁의 개인연금 신탁이자와 보험회사의 보험연금보험(농·수·축협 노후 적립연금 포함) 차익
- 2) 장기 주택마련 저축의 이자
- 3) 주식 및 채권의 양도차익
- 4) 5년 이상 장기 보험(농·수·축협의 공제포함) 차익
- 5) 94년 9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목돈마련저축의 이자, 장학적금, 근로자 장기저축의 이자, 국민주 신탁의 이자
- 6) 단위조합에 가입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과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96년말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함)
- 7) 98년말까지 가입한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의 이자(당초 계약기간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함)

둘째, 분리과세하는 소득으로는

- 1) 94년 9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 저축
- 2) 5년 이상 장기 채권 이자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청한 경우 그 이자
- 3) 부부합산하여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금융상품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까지는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단순히 세후 수익률이 높은 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에는 세후 수익률 개념을 종합과세 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과세 후 수익률은 개인마다 다르고 계산 또한 어려워 투자시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종합소득, 금융상품의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세율, 과세여부, 이자율, 만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사항을 체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종합소득은 얼마인가이다.

기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매 연도별 이자, 배당소득(부부합산),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체크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부부중 누가 주된 소득자로 되며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누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며 투자할 금융상품의 종류나 만기 등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율

현 행	개 정 안
0→4백만원 : 5%	0→1천만원 : 10%
4백만원→8백만원 : 9%	1천만원→3천만원 : 20%
8백만원→1천 6백만원 : 18%	3천만원→6천만원 : 30%
1천 6백만원→3천 2백만원 : 27%	6천만원초과 : 40%
3천 2백만원→6천 4백만원 : 36%	
6천 4백만원초과 : 45%	

둘째, 가족구성이다.

직계 존비속은 몇명이며, 그중 미성년자는 몇 명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족중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누구이며, 얼마인가를 체크하여 투자금액이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증여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 면제한도

관 계	'95년	'96년
배우자	3천만원 + 결혼여부 × 3백만원	5천만원 + 결혼여부 × 5백만원
직 계 존비속	3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3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기 타 친 족	5백만원	5백만원

증여세율(96년 1월 1일 시행)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2천만원	10%	-
1억 5천만원	20%	200만원
3억원 이하	30%	1,700만원
3억원 초과	40%	4,700만원

셋째, 원천징수시기를 고려 해야 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는 연도별로 안분 계산하지 않고 원천 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원천징수 시기가 곧 이자소득 귀속시기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단 96년 이후 원천징수 시에는 95년말까지 이자 발생 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므로 원천징수만 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넷째,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 할 것인가의 선택 95년말 까지 눈여겨 볼 단기 금융상품으로는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신종 환매 조건부 매도 채권(거액R.P), 표지어음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95년 7월 24일 금리자유화 조치로 최단 만기가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최저 예입금액도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나 환매체의 경우 2천만원, 표지어음은 1천만원으로 낮추어졌고 단기자금으로는 금리로 최저 10%에서 13%까지 예치기간별, 금액별, 금융기관별로 다양하게 협상하여 예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전의 예치수단으로 적합한 금융상품이며 양도성 정기 예금증서나 무기명 개발신탁의 경우에도 최종 소지인이 전 기간에 대한 이자가 귀속 되는 것으로 되어 만기전 매매시 종합과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장기투자형태로 적합한 상품으로는 비과세 대상 상품으로 개인 연금신탁에 가입해 둠으로써 고금리와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며 20세 이상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는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하도록 하여 결혼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주택구입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유 거액자금이 있을시 50년 이상 장기의 보험중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다른 방편일 수 있다.(농협의 한아름 공제등)

그외에도 내년도 금융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 금융상품들을 전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내놓을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예의 주시 후 개인 소득에 맞는 금융상품 투자가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협명하게 대처하므로써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 실명제 시대에 합당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양돈 가족이 되리라 생각된다.